

강원특별자치도

주의·권고

제 목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④ ○○소방서 ○○○○○(前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위 이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징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르면,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조에 따르면,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의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¹⁾)을 심의·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²⁾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민간위원은 자격요건 구분³⁾에 따라 위촉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되도록 규정⁴⁾되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소방행정과)에서는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령」 개정 사항 문서⁵⁾를 시행하며 ① 중징계 등 요구 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 상향, ②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구성요건 강화, ③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자료의 비공개 범위 명확화, ④ 성(性)비위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 절차 신설, ⑤ 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서 서식 규칙 이관 등, ⑥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절차 신설, ⑦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강화, ⑧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 신설 등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각 소방기관에 전달하여 개정 사항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1) 개정: 2023. 10. 10. / 개정 전 소방위 이하의 징계 등 사건(중징계 포함)

2) 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3)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②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③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④ 민간부분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개정: 2023. 10. 10. /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 및 공정성 강화로 전직 소방공무원 퇴직 3년 경과자 위촉과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동일한 자격으로 구성 금지 규정 신설

5) 도 소방행정과-8162(2023.10.12.)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이첩)」

도 소방행정과-8107(2023.10.12.)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04호) 공포 알림」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위 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운영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사건별 징계위원회 운영 시 동일한 자격으로만 구성된 민간위원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민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총 8회 개최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확인한 결과, 0000. 0. 00. 개최된 사건(소방♣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로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한 사례가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000. 00. 00.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개최된 총 2건의 징계위원회(소방☆ ☆☆☆, 소방♡ ♡♡♡)에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한 자격요건(전직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을 지정하여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4. 1. 2.까지 ○○소방서 ○○○○○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 12. 14. 개최된 '소방☆ ☆☆☆'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구성 시 개정된 법

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전직)'만을 지정하는 등 해당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실무를 담당하였다.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4. 8. 6. 개최된 '소방△ △△△'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구성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전직)'만을 지정하는 등 해당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실무를 담당하였다.

소방◇ ◇◇◇는 2023. 1. 4.부터 2024. 1. 1.까지 ○○소방서 ○○○○○ 행정 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 12. 14. 개최된 '소방㉡ ㉡㉡㉡'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구성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전직)'만을 지정하는 등 해당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해당 징계위원회 간사를 담당하였다.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 행정 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4. 8. 6. 개최된 '소방♡ ♡♡♡'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구성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전직)'만을 지정하는 등 해당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해당 징계위원회 간사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권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기존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 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고, 추후 징계위원회 개최 시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을 지정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황성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권고·시정

제 목 ○○소방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2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직원과 도내 중소기업 직원의 안전한 자녀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보육 기관에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탁 운영 등 소관 복지시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21조·제22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고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이 임면하며, 지출은 위의 규정에 의해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6)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수 있고,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원장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 및 세출의 내용과 산출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사업연도 매 분기마다 결산서를 작성하

6)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산순 행정관리 사무

여 제출했을 때 세부내용을 파악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으며, 매년 1회 지도점검 시에 위탁운영 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여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어야 했고,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구분된 사무편람 작성을 안내하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어린이집에서는 수입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및 계약 업무에 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어야 했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들을 명확하게 유지·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방서 어린이집 회계관리 소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방서 어린이집 수입·지출부를 검토한 바 총 728건의 지출 중 24건의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증빙자료들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 그 중 10건은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나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음에도 5일을 초과해서 지출하였고, 8건은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후에 업체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서 관리하였고, 6건은 해당 업체로부터 지출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지출되었음에도, ○○소방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문서로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의 결산내역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세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서 어린이집에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와 관련 수입원·지출원·계약담당자·회계담당자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 1인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맡아서 처리하여 지출에 대한 계획 및 결의문서, 계약서, 검수조서, 4대보험 완납증명 등 증빙서류가 미비된 채 보관하였다.

나. ○○소방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24. 2. 27. 실시한 수탁기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양호로 체크하였고,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여부에는 미흡으로 체크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용역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

다. 어린이집 사무편람 미승인

수탁기관인 ○○소방서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했지만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작성·관리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3.까지, 소방♡ ♡♡♡은 2022. 7. 4.부터 2023. 7. 2.까지, 소방♣ ♣♣♣는 2023. 7. 3.부터 2024. 1. 1.까지, 소방◇ ◇◇◇은 2024. 1. 2.부터 2024. 10. 30.까지, 소방◎ ◎◎◎은 2024. 11. 1.부터 2025. 1. 1. 까지, 소방△ △△△은 2025.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는 2021. 7. 5.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4. 7. 3.까지, 소방☆

☆☆☆는 2024.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21. 8. 2.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4. 7. 4.부터 2025. 1. 5.까지, 소방◇ ◇◇◇은 2025. 1. 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어린이집 운영 담당자로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2020. 7. 3.부터 ○○○○○○○○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관리·감독을 시작하였는데 ○○소방서 어린이집의 지출증빙자료들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에서 문서로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의 결산내역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세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소방서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수입·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중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인지 여부에는 양호로 체크하였다.

또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여부에는 미흡으로 체크하여 검수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적절한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도점검 이후에도 변함없이 검수조서는 작성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원아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입·지출 업무를 위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어린이집 원장 1인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어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계획문서, 결의문서, 물품검사(수)조서, 4대보험 완납증명 등)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관련 사무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기관인 ○○소방서 어린이집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 관련 조례에 따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도내 소방서 중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었던 점,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및 팀장이 자주 교체된 점, 방대한 어린이집 법령과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찬하기는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소방서 어린이집 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를 「부서경고」 처분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권고]** 예산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회계 및 수입·지출사무를 분담 운영할 수 있는 사무직원 채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시정]** 수탁기관인 ○○소방서 어린이집의 사무편람이 작성되면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비치하시고, 아울러 ○○소방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시정·통보

제 목 자산취득비 예산 사용 후 물품 등록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공동직장 어린이집·119안전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현장활동에 따른 화재·구조·구급·정보통신장비 보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6. 자산취득비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으며,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물품의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아래 [표2]와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표 2]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기준

물품종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구분 기준
비 품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소모품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별표1 발췌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e-호조 시스템에서 자산등재를 하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취득처리를 하여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자산등재 및 시스템 처리 소홀

e-호조 시스템에서 예산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200만원 이하의 카드결제 시 물품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 물품상세를 입력하지 않아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알수 없고 다중분개 절차에서 자산등재를 하지 않고 소모품처리를 하면 해당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운용의 문제점이 있다.

나. 구입물품 자산등재 처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 등 00종 00점 0,000,000원을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처리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3.까지, 소방♡ ♡♡♡은 2022. 7. 4.부터 2023. 7. 2.까지, 소방♣ ♣♣♣는 2023. 7. 3.부터 2024. 1. 1.까지, 소방◇ ◇◇◇은 2024. 1. 2.부터 2024. 10. 30.까지, 소방◎ ◎◎◎은 2024. 11. 1.부터 2025. 1. 1.까지 ○○○○○장으로,

소방△ △△△는 2021. 1. 2.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4. 30.까지 소방Ⓜ ⓂⓂⓂ은 2023. 5. 1.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4.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5. 1. 5.까지 자산등재 및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물품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우리가 관리하여야 할 비품은 물품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지출품의 단계에서부터 물품상세에 관련물품을 등재하여야 했고, 비품을 일반 지출결의서를 선택하여 품의하였을 때에는 다중분개 절차에서 소모품이 아닌 물품취득으로 분류하여 자산등재하였어야 했다.

또한 소방◇ ◇◇◇ 등 12명은 사업부서담당자로서 담당자들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시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였고 다중분개 시 구입물품을 자산 등재하여 물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여야 했지만 해당 비품들을 소모품 처리하여 정부의 재산으로 관리할수 없게 조치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어 회계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운 점, 관서 용도담당자는 계약업무뿐만 아니라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 등 업무가 과중한 점, 사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e-호조 자산등재·물품관리 교육이 없어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물품을 취득하면서 해당물품을 자산등재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를 「부서경고」 처분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 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시정] 물품관리시스템에 자산등재되지 않은 물품 ○○○○ 등 00종 00점 (0,000,000원)을 자산등재하여 관리하시고, 아울러 자산취득비 예산 및 비품과 소모품의 e-호조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장(○○○○○○○○)은

- ① [통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회계질서 정립을 위한 관서 계약·회계업무 지도점검 시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시정·통보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5조·제2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에이(A) 등급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자·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이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 중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는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신고 접수 시까지,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는 다중이용업주가 미성년·고령·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이나 출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일시 및 장소와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의2·제11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였어야 했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⁷⁾(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보수교육 도래 대상자를 검색한 후 월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화 및 문자로 한국소방안전

7) 기존의 민원정보시스템을 2023. 12. 4.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 중앙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통보하였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교육이수증 또는 시스템에서 전산 조회를 통해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 후 시스템에 갱신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수교육 업무를 처리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연간 교육계획 미수립

○○소방서(○○○○○○)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 전산 조회를 통해 교육 유효기간이 곧 도래되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검색한 후 월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나. 보수교육 통보 소홀

보수교육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교육 유효기간이 곧 도래되는 대상을 조회하는 경우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교육기준일자 등이 누락된 대상은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기간 중 시스템에서 ○○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관리현황”을 추출한 바 종업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 0,000명 중 00명의 교육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위 교육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00건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한 바, 규칙 제5조제②항에 따라 영업주가 법인이거나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등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00건이었고, 그 밖에 성명 입력 시 띄어쓰기 등 입력을 잘못 하였거나 교육이수 사항을 저장입력 하였음에도 교육기준일자 등이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00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육기준일자 등이 오기되어 교육대상 통보를 하지 않은 0명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 0개소의 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소방서(○○○○○)에서는 ○○○○○○ ○○ 0개소에 대한 교육 통보를 누락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3. 1. 1.까지, 소방♡ ♡♡♡은 2023. 1. 2.부터 2024. 6. 30.까지 ○○소방서 ○○○○○장으로,

소방♣ ♣♣♣은 2022. 3. 16.부터 2023. 4. 30.까지, 소방◇ ◇◇◇은 2023. 5. 1.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 ○○○○○장으로,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2. 27.까지, 소방◇ ◇◇◇은 2023. 2. 28.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3. 2. 28.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규정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 이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등이 1년 내외 주기로 교체된 점, 2023. 12. 4.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연간교육계획 미수립과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이수이력 누락 등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서경고」 처분 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라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시정]**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의 교육대상자를 현행화하시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및 적법하게 조치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등에 대하여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장(○○○○○○)은

[통보] 보수교육 통보를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는 경우 이수사항 미입력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가 누락되어

8)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초래하게 된 사실이 종합감사 시 발견되었으니, 소방본부에서는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이력관리를 통해 소방 예방정보시스템 상의 다중이용업소 현황과 교육대상자를 정기적으로 현행화 시켜 교육대상자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관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통보 시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이외에 이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집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